



POP 게시작업



도소매 및
소비자용품수리업

POP 게시작업이란?

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을 점원의 안내 없이도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상품정보, 생활정보 등을 매장 내외에서 직접 제공하는 광고기법을 POP광고(Point of Purchase Advertising)라 하고 해당 문구를 설치하는 작업을 POP 게시작업이라 한다.



● POP 광고의 종류 ●

- 점두 POP : 판매점의 이미지 향상과 제품에 대한 유익한 정보 제공을 통해 소비자를 점내로 유도하기 위한 원도우디스플레이, 연출용POP, 행사포스터, 현수막 등
- 점내 POP : 매장안내, 상품코너 분류, 행사분위기 연출을 통해 소비자의 효과적인 구매를 유도하기 위한 싸인보드, 일러스트, 모빌류, 행거, 현수막 등
- 진열 POP : 제품에 대한 간결하면서도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가 직접 제품을 만져보고 구매를 결정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품안내카드, 가격표 등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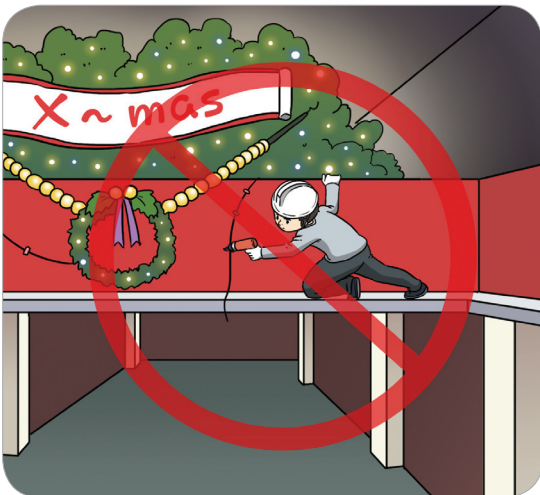


주요 위험요인

- ✓ 사다리, 작업발판에서 추락
- ✓ 매장 내 이동 중 전도
- ✓ POP 게시 중 자동문, 무빙워크 등에 끼임

안전대책

- 추락재해 예방
 - 높은 장소에 POP 게시작업 시 안전한 작업발판 사용
 - 이동식 사다리는 2인1조로 사용하고 보조작업자는 사다리를 지지
 - 진열대를 발판 삼아 딛거나 매달려 작업하지 말 것
 - 고소작업 시 안전대 및 구명줄 등 추락방지 보호장비 활용
- 전도재해 예방
 - 계단, 복도에 걸려 넘어질 수 있는 물건을 정리정돈
 - 계단, 무빙워크 이용 시 핸드레일을 잡고 이동
 - 작업구역 내 타 근로자의 접근을 차단하여 접촉으로 인한 전도 등 예방
- 끼임재해 예방
 - POP 게시물 부착 시 불시에 자동문, 무빙워크 등이 가동되지 않도록 전원 차단
 - 출입문 등을 임의로 가동하지 않도록 “작업 중 가동금지” 게시
 - 전동공구 사용 시 면장갑이 공구날에 감기지 않도록 조치



진열대를 발판 삼아 딛거나 매달려
작업하는 행위 금지



POP 게시 작업 중을 알리는
표지판 설치





재해사례 : 마트 2층 매장에서 크리스마스 소품(POP) 설치 중 추락

개요

크리스마스 판촉행사용 소품을 설치하기 위해 중층부 2층 매장 슬라브 콘크리트난간 위(폭 0.5m)에 엮드려 벽면에 소품(POP)을 고정하기 위해 전동드릴로 나사못을 박다가 몸의 균형을 잃고 5.3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



발생원인

- 안전한 작업발판 미설치
- 안전모 등 보호구 미착용

예방대책

- 안전한 작업발판 설치 철저
 - 2m 이상 고소 작업 시에는 견고하고 안전한 구조의 이동식 비계 등을 사용한 작업발판 또는 전용 작업대를 설치·사용
 - 안전한 구조의 전용 고소작업대 사용
- 보호구 착용 철저
 - 고소작업 시 추락재해 방지를 위한 안전모 및 안전대 착용 철저
 - 안전대는 안전대 부착설비에 연결하여 사용





안전수칙

작업 전

- 작업 전 추락, 전도 등 재해 위험이 있는지 확인하고 예방조치를 한다.
- 고소작업인 경우 안전한 작업발판, 안전대 및 구명줄을 설치한다.
- 작업에 필요한 도구, 장비 및 보호구를 준비한다.
- 계단, 복도에 걸려 넘어질 수 있는 물건을 정리정돈한다.
- 작업구역에 POP 게시작업을 알리는 표지판을 세워둔다.

작업 중

- 높은 장소에 POP 게시작업 시 안전한 작업발판을 사용한다.
- 이동식 사다리는 2인1조로 사용하고 보조작업자는 사다리를 지지한다.
- 진열대를 발판 삼아 딛거나 매달려 작업하지 않는다.
- 고소작업 시 안전대 및 구명줄 등 추락방지 보호장비 활용한다.
- 계단, 무빙워크 이용 시 핸드레일을 잡고 이동한다.
- POP 게시물 부착 시 불시에 자동문, 무빙워크 등이 가동되지 않도록 전원 차단하고 임의로 가동하지 않도록 스위치에 “작업 중 가동금지”를 게시한다.
- 전동공구 사용 시 공구날에 손이 감기지 않도록 주의한다.



관련 법령

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
 - 제3조 (전도의 방지)
 - 제22조 (통로의 설치)
 - 제32조 (보호구의 지급 등)
 - 제44조 (안전대의 부착설비 등)
 - 제88조 (기계의 동력차단장치)
 - 제20조 (출입의 금지)
 - 제24조 (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)
 - 제42조 (추락의 방지)
 - 제56조 (작업발판의 구조)
 - 제92조 (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)

